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정현・김영호

염태영 · 복기왕 · 황정아

소병훈 · 장종태 · 문진석

조승래 · 문대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.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, 합계출산율은 2006년 1.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.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.

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, 종교문화행사지원,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, 그린스마트스쿨 조성,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.

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·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·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

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).
- 나.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).
- 다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(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120호),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4호),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1호)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4"를 "제73조의5"로 한다.

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 예산이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 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인지 예산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방인구

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- ④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구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국공립 연구기관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
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- ⑤ 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,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1.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
- 2.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
- 3.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
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기관,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인구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3(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 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 성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대응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한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(이하 "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"라 한다)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2, 제68조의3"을 "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 까지"로 한다.

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4(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인구감

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 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.
- ③ 정부는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영향평가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와 전담부서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.
- 1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
- 2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
- 3.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
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기관,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

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4(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인구감소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인구증감 및 저출산・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 례) 제27조의2.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

27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의 개정 규정은 각각 202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4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5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
	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
	예산이 인구 증감 및 저출산
	• 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
	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
	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제27조의2(인구인지 예산서의 작

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인구인지 예산서에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한다.

③ 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 문수· 구청장에게 지방인구영향평가 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④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

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구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국공립 연구기관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
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 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
 단체출연 연구원
-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- ⑤ 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9의2. (생략) <u><신</u>설> 10. ~ 16. (생략) <신 설>

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 무담당자를 지정하고, 전담부서 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1.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 정 및 관리

- 2.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 과 및 지표 관리
- 3.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⑥ 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 구영향평가기관,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,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9의3. 인구인지 예산서
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3(인구인지 결산서의 작 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

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 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 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 구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 성하여야 한다. ② 인구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,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

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

② 인구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한 인구영향평가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(이하"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"라 한다)등을 포함하여야한다.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, <u>제68조의2</u>, <u>제68조의3</u>,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

제65소(나든	멉뉼과의	관계)	
		-제682	준의2
부터 제68	조의4까지		

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,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68조의4(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 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는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인구영향평가 위원회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 획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도록

할 수 있다.

① 정부는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영향평가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수 있다.

- ⑤ 정부는 인구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제27 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 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와 전담부서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. 1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
- 2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

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
- 3.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⑥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 회와 인구영향평가기관, 인구인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연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지 기금운용계획 전담부서 설
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
부서류)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
7. (현행과 같음)
제73조의4(인구인지 기금결산서
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인
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
<u>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</u>
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 •
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
<u>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</u>

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 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인구증감 및 저출산 •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 과분석 및 평가,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. 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(생 략) 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(현행 제73조의4와 같 음)